

기본소득에 관한 다양한 제안의 평가와 과도기적 기본소득의 제안: 청장년 근로시민 기본소득이용권

석재은
(한림대학교)

이 논문은 불안정노동층(precariat) 증가 등 복지체제 균열에 대응한 새로운 분배방식으로 전세계적 관심을 받고 있는 기본소득에 관한 다양한 구상들을 평가하고, 기본소득을 단계적으로 도입하는 방안을 제안하였다. 현재 국내외에서 제안되거나 실험되고 있는 기본소득 구상을 평가한 결과, 상당수가 기본소득의 핵심 정체성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평가되었다. 새로운 기본소득 구상의 조건은 보편성, 무조건성, 충분성 등 탈상품화(de-commodification)에 대한 진정한 자유(real freedom)를 충족하면서도 임노동기반 사회안전망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하는 복지체제 균열을 점진적으로 대체할 수 있는 사회적 효용성이 높은 방안이어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조건들을 충족하는 방안으로 불안정노동 문제를 겪는 청장년층을 대상으로 기본소득의 이용가능 기간을 한정하는 '기본소득 생애이용권' 방안을 제안하였다. 즉 청장년 근로시민에게 보편적으로 기본소득 이용기회를 보장하는 [청장년 근로시민 기본소득이용권]을 도입하는 방안이다. 이때 기본소득은 화폐자원 배분뿐만 아니라 인식기간 또는 생애 전환기간 보장의 의미를 갖는다. 또한 이 방안은 4차 산업혁명 등 임노동기반 자원분배 방식에 균열이 커지는 변화에 대응하여 [청장년 근로시민 기본소득이용권]의 이용기한을 탄력적으로 조정함으로써 기본소득 역할이 단계적으로 확대될 수 있는 가능성을 내포한다.

주요 용어: 기본소득, 기본소득 평가, 기본소득이용권, 청장년, 근로시민

이 연구는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의 '2017년 재정전문가네트워크 연구사업'의 지원을 받아 수행되었음. 이 논문은 [한국사회의 균열과 복지체제의 재구성](2018) 연구보고서에 포함된 '복지체제의 균열과 기본소득의 탐색'을 학술논문으로 전면 수정한 내용임. 또한 이 논문은 2016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NRF-2016S1A5A2A03926989).

■ 투고일: 2018.1.31 ■ 수정일: 2018.4.16 ■ 게재확정일: 2018.4.30

I. 서론

기본소득 논의가 전성시대를 맞고 있다.¹⁾ 기본소득에 대한 높은 관심은 서비스경제로 이동하고 프레카리아트(precariat) 등 불안정노동층이 광범화되며, 4차 산업혁명으로 일자리가 축소되는 생산체제의 변화에 따라 임노동중심 복지체제에 균열이 발생하고 있는 데 기반하고 있다. 기본소득(Basic Income)은 정부가 모든 시민에게 노동, 기여, 필요 등과 관계없이 무조건적(unconditional)으로 일정액의 소득을 지급하는 것을 의미한다(Standing, 2014; Van Parijs, 2016).

기본소득을 세계적인 아젠다로 부상시킨 것은 2017년 세계경제포럼(WEF, 소위 다보스포럼)이었다. 2017년 세계경제포럼(다보스포럼)에서 제4차 산업혁명에 따른 인공지능과 로봇기술의 발전, 고용없는 성장, 양극화 대안으로 기본소득을 논의함으로써 기본소득에 대한 전세계적 관심을 더욱 촉발시켰다. 다보스포럼에서는 4차 산업혁명으로 테크놀로지가 인간의 노동을 대체하여 향후 710만개의 일자리가 사라질 것이라 전망했다. 이로 인해 불평등과 양극화는 더욱 심화될 것이고, 이는 경제체제의 지속가능성에 심각한 도전이 되기 때문에 분배방식의 대안체제로 기본소득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더욱이 기본소득은 이제 논의나 담론 수준에 그치지 않고 현실적인 정책대안으로 제안되고 실험되고 있다. 그동안 기본소득은 다양한 이념적 스펙트럼 하에서 사회담론 및 사회운동 차원에서 논의되어 왔으나, 최근에는 국내외의 현실 정치에서 기본소득이 실질적이고 실용적인 정책아젠다로 급부상하였다.

국제적으로 기본소득이라는 이름으로 다양한 기본소득이 사회적 실험으로 시도되고 있다. 핀란드의 기본소득(월 70만원 수준) 시범사업, 네덜란드의 기본소득 시범사업 추진, 스위스의 기본소득(월 300만원 수준) 도입에 대한 국민투표 회부 및 부결, 미국 캘리포니아주 오클랜드시 기본소득(월 220만원) 시범사업 실시 등(최한수, 2017) 세계적으로 기본소득이라는 이름으로 다양한 수준의 기본소득에 대한 사회적 실험이 시도되

1) 그동안 기본소득 관련 국내연구는 상당히 많이 이루어졌다. 기본소득에 대한 정치경제적 해석(강남훈, 2013; 광노완, 2008, 2013; 김교성, 2016; 서정희, 조광자, 2008; 안현효, 2012; 이명현, 2010, 2011; 이주희, 2011), 젠더적 관점에서의 기본소득의 의미와 효과(권정임, 2013; 김교성, 2017; 김혜연, 2014; 윤연숙, 2012), 인자본주의와 기본소득(강남훈, 2016; 안현효, 2016; 이항우, 2015), 기본소득 대안 제안(김교성 등, 2017; 이승윤 등, 2016; 주은선, 2013), 기본소득 정책효과(김교성, 2009; 백승호, 2010; 정원호 등, 2016) 등에 대한 논의로 확대되고 있다.

고 있다.

한국에서는 녹색당이 기본소득을 수년전부터 당론으로 천명해 왔지만, 사회적으로 중심적 아젠다가 된 것은 2016년 기본소득이라는 이름으로 성남시에서 청년실업에 대응한 청년배당 도입과 서울시에서 청년수당 도입이 시도되는 과정에서 중앙정부와 갈등을 일으키며 커다란 정치적 쟁점이 되면서 부터이다. 이후 19대 대선에서 기본소득이 주요 정책쟁점으로 부각되었다. 대부분의 주요 대선주자들이 기본소득에 대해 긍정적인 견해를 보였다(한겨레21, 1145호: 2017.1.10). 이재명 대선후보, 심상정 대선후보, 문재인 대선후보 공약에서 각각 다른 내용의 기본소득을 공약했고, 문재인대통령 국정과제에 포함된 아동수당, 기존 기초연금이 기본소득의 일종으로 재명명되기도 하였다.

한림대 세대공생연구팀에서 수행한 기본소득에 대한 한국의 시민인식 조사에 따르면,²⁾ 기본소득에 대한 시민의 평가는 비교적 호의적이다.³⁾ 기본소득 도입에 적극 찬성 및 대체로 찬성한다고 응답한 비율이 62.7%로 과반을 넘어, 적극 반대 및 대체로 반대라고 응답한 37.3% 보다 높게 나타났다. SNS에서도 기본소득에 대한 일반 시민의 관심은 매우 높게 나타나고 있다. 특히 AI, 로봇기술 등 4차 산업혁명을 이끄는 실리콘밸리, KAIST 등 과학계에서 앞장서서 기본소득에 관심을 갖고 세미나를 개최하고 있기도 하다.⁴⁾ 인문학계에서도 깊은 관심을 갖고 있다.⁵⁾ 2017년 7월에는 기본소득지구네트워크

2) 고려사회의 세대공생(연구책임: 석재은)에서 2016. 8월 서베이 몽키(SurveyMonkey.com)에 의뢰하여 할당표집으로 502명에 대하여 이루어졌다. 이 조사는 2013년 정부(교육과학기술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NRF-2013S1A5A2A03045488). 동설문조사에 대해 2016년 7월 20일 한림대학교 생명윤리위원회에서 인간대상 설문조사에 대한 승인을 받았음(HIRB-2016-035).

3) 기본소득에 대해 ‘좋은 제도이며 도입되기를 기대하고 도입이 가능하다고 응답한 비율이 22.9%였으며, ‘좋은 제도이지만 현실적으로 도입이 어렵다고 응답한 비율이 50.6%로, 기본소득에 대해 긍정적인 인식이 무려 73.5%로 나타났다. 이에 반해 ‘좋은 제도적 요소가 있지만 제도도입은 바람직스럽지 않다’와 ‘단점이 많은 제도이므로 도입되어서는 안된다고 부정적 인식을 보여준 비율은 각각 15.7%, 10.8%였다(석재은, 2017).

4) 실리콘밸리는 극빈층 증가, 소득불평등 확대, 중산층 몰락, 특히 사물인터넷(IoT)-사이버물리시스템(CPS)-인공지능-로봇을 기반으로 하는 ‘제4차 산업혁명’ 이후 일자리 감소의 대안으로 기본소득을 제안한다(한겨레, 2017.11.16). 페이스북 창업자 마크 저커버그는 하버드대 졸업 축하에서 “누구나 새로운 아이디어를 시도할 수 있도록 완충 장치(cushion)를 만들어야 한다. 이를 위해 보편적 기본소득(Universal Basic Income) 같은 아이디어를 연구해야 한다. 페이스북 프로젝트가 실패하더라도 안전망이 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실패에 대한 두려움 없이, 자신감을 갖고 창업을 추진할 수 있었다고 했다. 생계를 돕느라 컴퓨터 코딩을 배울 기회를 갖지 못하는 아이들에게 기본소득이 ‘쿠션’이 되어줄 수 있다는 의미라고 하였다(중앙일보, 2017.5.30).

5) 백종현 서울대 철학과 명예교수는 세미나에서 인공지능 로봇이 생산 역군이 되는 상황에서 사람

(BIEN)가 서울에서 개최되기도 하는 등 기본소득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광범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기본소득이 전세계적 관심을 받으면서, 최근 도입이 검토되는 대안적 소득보장제도들을 앞다투어 ‘기본소득’이라고 명명하는 기본소득 fashion, 기본소득 syndrome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기본소득’이라고 동일하게 지칭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본소득의 설계내용이 매우 다양할 뿐만 아니라 그 중에는 과연 기본소득이라고 칭하는 것이 합당한 것이냐에 대한 논란을 야기할 정도로 전형적인 기본소득에서 벗어난 변형적 기본소득이 널리 나타나고 있다. 전형적 기본소득을 완전기본소득이라 하고 변형적 기본소득을 부분기본소득이라고 구분하기도 한다.

이에 따라 기본소득의 핵심 정체성이 과연 무엇인가에 대한 혼돈이 발생하고 있다. 현재 제안되거나 실험되고 있는 대안적 소득보장제도를 과연 기본소득으로 명명하는 것이 적절한가? 기본소득의 정체성을 구성하는 핵심 요체는 무엇인가? 이와 같은 기본소득의 핵심 정체성에 대한 의문은 ‘왜 기본소득 도입이 필요한가’라는 근본질문으로의 회귀와 성찰로 이끌게 된다. 소위 ‘기본소득’이라고 명명되는 제도들이 과연 기본소득의 필요성 근거로 제기된 복지체제의 균열에 대한 대안적 소득보장제도로서의 ‘실질적 내용성’을 담보하고 있는가 라는 점에서 회의감이 제기되기 때문이다.

또한 다른 한편에서는 전형적인 기본소득에서 벗어나는 기본소득 논의에 대해 기본소득이 아니라는 엄격한 평가를 내리기도 하고(조남경, 2017), 또 한편 전형적인 이상적인 완전기본소득을 필연적인 종착점으로 상정하고 이를 위한 경로를 모색하고 있기도 하다(김교성 등, 2017). 또한 현재 제안되는 변형적 기본소득은 기존 복지체제의 정책수단 중 하나인 사회수당과 별다른 차이가 없다고 보기도 한다(양재진, 2017; 윤홍식, 2017).

그러나 기본소득이 현행 복지체제의 균열에 대한 변혁을 품은 대안으로서 모색되는 정책수단이라는 점을 고려한다면, 한국에서 기본소득의 모색을 위한 논의에서는 두 가지 점이 함께 고려되는 것이 필요하다. 하나는 한국 복지체제의 균열에 대응하는 새로운 분배방식으로서 기본소득이 검토되는 만큼 기본소득의 핵심 정체성을 유지하는 것이 필요하고, 다른 하나는 현 복지체제의 균열 단계에 부합하는 수준에서 기본소득의

근로자가 부담하는 소득세는 점차 축소될 것이므로 생산자와 유통자가 부담하는 생산세와 유통세 같은 것이 도입돼야 하며, 기계가 노동력을 대체하면 구매력이 없어지는 인구가 더욱 늘어나고 빈부 격차도 더욱 심화돼 오히려 발전 동력을 잃을 수 있기 때문에 매월 현금으로 배분하는 방식의 국민 기본소득제도의 도입이 필수적이라고 주장했다(비즈니스 위치, 2011.7.10).

변형을 수용하는 창의적인 기본소득 구상을 모색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 연구는 기본소득을 구성하는 핵심요소를 추출하고 핵심요소를 중심으로 평가틀을 구성하고, 기본소득의 수용가능한 변형의 범위를 설정하며, 기본소득으로 명명되고 있는 다양한 제안 및 실험들에 대해 기본소득으로서의 정체성을 평가해보고자 한다. 그리고 기본소득 정체성 평가에 기반하여, 기본소득의 정체성을 훼손하지 않으면서도 현재 한국 복지국가의 균열 수준 등을 고려한 과도기적인 한국의 기본소득 설계에 대한 구상(안)을 제안해보고자 한다.

II. 복지체제의 균열과 기본소득

1. 복지체제의 균열과 기본소득의 필요성

기본소득을 처음 주창한 필레페 판 파레이스(Philippe Van Parijs, 2016)는 그의 저작 [Real Freedom for All]에서 “기본소득(basic income)은 정부가 평생 아무런 조건 없이 성인(시민)들에게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급여이다. 자산을 따지지 않고 지급하는 기본소득은 낙인이 없고, 실업함정(unemployment trap)도 제거할 수 있으므로 노동유인 저해는 없다. 의무로부터 ‘실질적 자유(real freedom)’를 선물 받는 것”이라고 하였다.

기본소득 논의 배경에는 공통적으로 서비스경제 사회로 이동하면서 불안정노동이 일상화되고 4차 산업혁명으로 일자리가 축소되는 생산체제의 변화에 따른 복지체제의 균열에 기반하고 있다. 산업사회에 조응하는 사회체제로서 복지체제에 균열이 발생하고 있으며 새로운 생산체제에 조응하는 대안적 사회체제의 구성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인류 역사 및 비교사회적 관점에서 보면, 생산과 분배 문제는 매우 다양한 제도화된 방식으로 해결해왔는데, 현대 산업사회의 생산물에 대한 자원분배의 주요한 제도적 방식인 ‘임노동계약’이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점차 많은 사람들에게 적당한 일자리를 할당해 주지 못하고, 적당한 보수와 보호를 제공해 주지 못하는 사회로 변하고 있다. 사회질서 유지의 축으로서 노동계약과 완전고용 패러다임이 붕괴되고 있다. 비정규직 고용 및 불안정노동(precariat) 등 고용의 불안정성(precariousness)이 증가하고, 근로빈민

(working poor), 영세 자영업자 등을 비롯한 사회보장 사각지대가 커지며 생존의 불안정성(insecurity)이 높아지고 있고 비예측성(unpredictability) 및 불확실성(uncertainty)이 높아지는 사회로 이동하고 있다(Offe, 1997; Standing, 2002; 2014). 따라서 새로운 생산체제에 조응하는 자원배분을 위한 대안적인 새로운 분배방식이 필요해졌다. 그 대안으로 Offe(1997)는 시민권에 기반한 무조건적 기본소득을 제안한다. 기본소득이 완전 고용과 결부되지 않은 경제적 시민권(economic citizenship) 확립을 실현하는 방안이기 때문이다.

기본소득은 다음과 같은 점에서 지지된다. 첫째, 기본소득은 무조건성, 즉 노동이나 자산조사를 조건으로 하지 않기 때문에 가장 취약한 집단에게 협상력을 제공하여 형편 없는 일자리의 팽창을 막을 수 있다(판 파레이스, 2011, pp.37-38). 이는 노동 및 자산 조사를 조건으로 하는 최소소득보장제도와 구분되는 지점이다. 반 파레이스는 [Real freedom for all](1995)에서 기본소득은 좋은 삶이라고 생각하는 것을 실현할 수 있는 진정한 자유(real freedom)를 보장한다는 점에서 사회정의에 부합한다(Van Parijs, 2006; 2016). 즉, 기본소득은 임노동 중심의 분배방식을 시민권(citizenship)에 입각한 분배방식으로 변화시킴으로써 인간존엄에 대한 사회적인 물질 토대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인간의 가치, 인간노동의 가치를 제고하는 협상력을 제공하며, 노동과 여가의 조화를 가능하게 할 수 있다(Offe, 1997; 2000).

둘째, 기본소득은 포디즘체제(Fordism regime)의 표준화된 사회적 위험에 최적화된 기존 사회보험 중심 사회보장제도가 효과적으로 대응하지 못하고 점점 복잡다기해지는 소득상실 위험에 대해 효과적으로 소득을 보장할 수 있음으로 빈곤 및 불평등 해소에 기여할 수 있다. 사회보험은 임노동에 기반한 사회보장체계이므로 불안정노동이 증가하는 상황에서는 광범한 사회보장 사각지대를 초래하여 사회안전망으로서의 역할에 한계가 있다. 불평등을 심화하고 양극화를 초래하게 한다.

셋째, 기본소득은 가사노동, 돌봄노동 등 가정 내 부불 무급노동(unpaid free labor)에 대한 사회적 보상의 역할을 하게 됨으로써 젠더불평등 완화에 기여할 수 있다. 메리 울스톤크래프트(Mary Wollstonecraft)는 1792년 '여권의 옹호'에서 여성 시민권과 완전한 지위를 획득하기 위해서는 결혼유무와 무관하게 경제적 독립성이 확보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기본소득은 모든 여성에게 평생동안 경제적 독립성을 제공할 것이므로 페미니스트들이 기본소득 도입을 지지할 것이라 예측할 수 있다. 패이트만(Pateman)은

기본소득에 관심 갖는 이유로 탈상품화(de-commodification)를 통해 모든 사람에게 실질적 자율성(autonomy), 자치(self-government)와 시민권이 보장되는 민주화(democracy)가 촉진되고, 특히 여성(women)의 자유를 증진시키는 잠재력을 갖고 있다는 점을 들었다. 동시에 기본소득이 진정한 자율성과 가치를 가지려면 결혼, 고용, 시민권 사이의 구조적 관계, 그리고 공사 성별 노동분업의 구조적 관계를 예민하게 고려하여야 함을 지적했다. 여성의 자치와 시민으로서의 완전한 지위가 갖는 문제는 개인들이 사회적 관계와 제도적 맥락내에서 개념화될 때만 드러나기 때문이다.

“첫째, 기본소득은 사회적 약자에게 협상력을 제공한다. 협상력은 시민으로서의 완전한 지위의 산물이며 기본소득은 이를 형성할 수 있게 한다. 둘째, 기본소득은 시민들에게 고용되지 않아도 되는 자유를 제공한다. 셋째, 기본소득은 결혼, 고용, 시민권 사이의 상호 강제 구조를 비판적으로 재평가하고 이들 제도들이 보다 민주적인 새로운 형태로 재구성될 가능성을 열어준다. 특히 불평등 지위에 놓여진 시민으로서의 아내에게는 더욱 그러하다 (Pateman, 2010)”

그러나 기본소득이 성별 노동분업을 강화하고 열등시민으로서의 여성의 지위를 고착화할 것이라는 우려에서 비판적인 견해도 있다. 기본소득이 여성의 자유에 대한 기존의 제약을 재강화한다는 것이다(Pateman, 2006; Robeyns, 2008; 김교성, 2017).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본소득은 노동시장에서의 성격차를 해소하고 여성의 경제적 독립성과 협상력을 높여주는 자원이다.

넷째, 기본소득은 시장가치에 관계없이 사회적으로 의미있고 가치 있는 일에 대해 사회적 보상을 통해 장려할 수 있다(Atkinson, 2006; Standing, 2002). 애킨슨(Atkinson, 2006)은 무조건적인 기본소득을 의미있는 활동에 참여하는 시민에 대한 급여 성격으로 규정하여, 유급 및 무급의 생산/재생산/유익한 활동에 참여하고 있는 모든 사람에게 지급되는 자산조사를 수반하지 않는 수당인 참여소득(participation income)으로 제안하였다. 기본소득은 하고 싶은 일, 의미 있는 일을 하라는 것이며, 일은 임금노동의 의미를 넘어 우리의 삶을 더 나은 방향으로 이끌어주는 것이어야 한다. 사람들이 스스로 삶을 통제하며 살아가고 있다고 느낄 수 있도록 하는 장치가 기본소득이며, 기본소득이 보장되면 개인의 생활과 시간을 스스로 통제할 수 있다.

다섯째, 기본소득의 정당성은 산업자본주의에서 인지자본주의(Cognitive Capitalism)로의 전환에 따라 사회적으로 생산된 지식, 정보, 문화 등에 기반한 초국가적 인지자본의 지대(rent) 성격의 독점적 이득을 사회적으로 환수하여 시민들에게 기본소득을 배분해야 한다는 것에 기반한다(안현효, 2012, 2016; 이항우, 2015). 이는 국민국가를 넘어 글로벌 기본소득(Global Basic Income)의 논리를 제공한다.

그러나 기본소득에 대한 우려도 만만치 않다. 기본소득을 둘러싼 전통적 우려인 근로의욕 저해, 재정규모 막대 및 재원조달(세금부담) 어려움, 이민자 및 난민에 대한 사회적 부담 증가(Van Parijs, 2006) 외에도 기본소득이 복지국가에서 획득해 온 사회보장 성과를 해체하는 것에 대한 우려도 높다(Esping-Anderson, 2002). 기본소득이 복지국가 성과를 완전히 대체하기 어려움에도 대체하는 방식으로 이용되어 결과적으로 오히려 복지국가 성과를 축소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 OECD(2017)는 ‘Basic Income as a policy option’라는 연구보고서에서 프랑스·이탈리아·영국·핀란드 4개국을 대상으로 기본소득을 복지혜택을 대체하는 방식으로 도입할 경우의 경제적 효과를 시뮬레이션 분석하였다. 그 결과, 모든 국민에게 동일한 기본소득을 배분하는 경우 선진국에서는 빈곤층을 줄이지 못하면서 모든 계층의 세금부담은 훨씬 커지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보고했다.⁶⁾ 특히, 한국 사회와 같이 복지국가 체제가 공고화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기본소득 도입이 기존의 복지성과를 해체하며 대체하는 경우에 나타날 부정적 파급효과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상당하다(양재진, 2017; 윤홍식, 2017).

6)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2017년 5월 23일 ‘Basic Income as a policy option’이란 연구보고서를 발표했다. OECD는 기본소득 시뮬레이션의 전제 조건으로 ▶예산 증액이 없는 선에서 ▶은퇴 연령 이전의 성인 및 어린이를 대상으로 지급하고 ▶기존의 복지 혜택은 모두 삭감하고(주택보조금과 현물 지원은 유지) ▶기본소득에도 과세하는 것으로 설정했다. 이런 시나리오를 적용하면 1인당 기본소득 지급액은 빈곤선(빈곤을 면하기 위해 필요한 최소 금액)을 밑돌았다. 예컨대 프랑스 성인은 기본소득으로 월 456유로(약 57만원)를 받게 되는데, 프랑스 성인 1인당 빈곤선은 이보다 훨씬 높은 월 909유로(약 114만원)다. 현재 복지 혜택을 받고 있는 저소득 가정은 기본소득제도가 실시되면 형편이 더 나빠지는 셈이다. 특히, 프랑스와 이탈리아의 조기 은퇴자(55~64세)와 실업자는 현행 사회보장제도에서 받는 혜택보다 손해를 봤다. 핀란드·프랑스·영국에서는 빈곤율이 증가했다. 이탈리아는 빈곤율이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현재 이탈리아 복지혜택이 고소득층보다 빈곤층에게 불리하게 짜여져 있어서다.(OECD, 2017; 중앙일보, 2017.5.30)

2. 기본소득 논의의 지형

기본소득에 대해 급격히 높아진 관심은 4차 산업혁명으로 일컬어지는 생산체제 변화에 따른 고용없는 성장, 일자리 축소, 불안정노동 증가 등 노동시장 문제에 따른 임노동과 임노동연계 사회보험 중심의 기존 분배체계 한계에 대한 공통적 문제의식에서 출발하고 있지만, 현재 기본소득의 논의는 크게 두가지 상이한 차원과 지향에서 전개되고 있다.

한 갈래는 기본소득 논의의 원류를 구성하는 한 갈래는 모든 사람에게 진정한 자유(Real freedom)을 담보해 줄 수 있는 물적 조건으로 임노동 중심의 자본주의 분배체계를 시민권 중심으로 재편하는 대안적 사회체제의 구현체로 제안되었다(Van Parijs, 2016; Offe, 1997, 2000; Standing, 2002, 2014). 기본소득은 시장에서 노동을 팔지 않아도 기본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탈상품화(de-commodification)를 보장함으로써 산업사회에서 생존을 위한 물적자원 확보의 가장 중요한 전제인 임금노동의 중심성을 약화시킨다. 결과적으로 기본소득은 노동 제공에 대한 자본에 대한 협상력을 높여 진정한 자유를 보장하며, 더 나아가 자본과 임노동의 생산관계 질서에 도전하는 변혁의 잠재력을 갖는다고 간주된다.

따라서 기본소득은 최소한의 생활을 할 수 있는 기본적인 수입을 받을 수 있어야 하며, 이러한 생존권은 노동자로서 사회에 유익한 노동을 했기 때문이 아니라 시민이라는 이유만으로 얻어야 할 천부적 권리로 간주된다. 시민이라는 이유로 기본적인 소득과 생존권이 보장되어야 한다. 시민권의 개념이 경제적 보상의 범주를 초월하지 않으면, 현재의 불안정성의 문제는 결코 해결될 수 없다. 여기에서 임노동 관계에 있지 않은 아동, 노인, 장애인 등에 대한 자원배분은 임노동계약에 의한 자원배분과 비교할 때는 부차적이고 파생적인 자원배분 유형으로 간주된다(Offe, 1997).

다른 한 갈래의 논의는 보다 실용적이고 기능적인 차원에서 기본소득을 논의한다. 임노동 성과와 긴밀히 연계된 사회적 위험 대응체계인 사회보험 방식의 사회보장체계가 한계를 보이는 상황에서 기본소득이 불확실한 후기산업사회에 조용히는 보완적 소득보장체제로 검토된다. 기본소득은 사회보험의 사각지대 등 불완전하고 불충분한 사회보험을 보완하며 기본생활을 보장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앞의 논의가 임노동을 대체하는 1차 분배방식에 대한 도전적 잠재력을 포함하고 있다

면, 후자는 복지제도 차원에서 3차 분배방식의 변화에 가깝다. 두 갈래의 기본소득 논의는 4차 산업혁명으로 일컬어지는 인공지능 등 기술발전이 인간노동을 대체함에 따른 일자리의 축소와 고용 불안정성 증가, 사회보험 중심 사회보장체계 한계 등 동일한 사회변화를 배경으로 공유하지만, 기본소득을 통한 목적 지향이 상이하며, 그에 따라 기본소득의 설계는 매우 상이하다.

노동의무로부터 진정한 자유라는 탈상품화 권리를 획득한 주체적이고 적극적인 시민권의 실현을 의미하는가, 아니면 생산주체의 입장에서 유효수요를 적절히 창출하여 경제의 순환을 원활하게하기 위한 최소한의 소득이전인가? 체제변혁의 이데올로기인가, 아니면 현실적인 필요를 충족하기 위한 소득보장 방편인가? 고용 및 임금을 대체하는 분배를 의미하는가, 아니면 사회보험의 보완 및 부분적 대체를 의미하는가? 이 둘의 관계는 질적으로 구분되는 것인가, 아니면 연속적이고 단계적이고 점진적인 것으로 볼 것인가? 이에 대한 대답은 기본소득 도입을 주창한 근본적 문제의식으로부터 찾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기본소득을 처음 주창한 필레페 판 파레이스(Philippe Van Parijs, 2016)는 그의 저작 [Real Freedom for All]에서 “모든 시민에게 미약하나마 무조건적 소득을 지급하라. 그리고 시민들이 여기에 다른 소득을 더하여 총소득을 늘리게 하라”고 제안하였다. 기본소득인 것과 기본소득이 아닌 것에 대한 구분과 관련하여, 아동 및 노인 등 모든 시민을 포함하는 것과 아동 및 노인을 제외하고 근로연령층만 포함하는 것에 대해서는 비교적 유연한 입장을 취한다. 그러나 기본소득을 왜 필요로 하는가를 고려할 때, 기본소득의 핵심은 자산조사와 노동능력을 평가하지 않는 무조건성 원칙의 관철임을 강조한다. 무조건적 기본소득은 노동 제공에 대한 협상력을 제공함으로써 형편없는 일자리에 억지로 노동을 팔지 않아도 될 수 있도록 하며, 삶의 주인으로서 좋은 삶의 방식을 선택할 수 있는 선택권을 제공하는 데 있음을 강조한다(Van Parijs, 2006). 이러한 맥락에서 기본소득의 핵심 요체는 노동 제공의 자유와 협상력을 제공하는 탈상품화(de-commodification)이며, 그 이외의 요소는 유연하게 판단할 수 있다.

한편, 앳킨슨(2006), 스텐딩(2002; 2014)은 기본소득을 의미있는 활동에 참여하는 시민에 대한 참여소득(participation income)으로 제안하고 있다. 이는 천부적 인권, 시민권에 기반하여 무조건적으로 지급하는 것과는 차이가 있다.

다른 한편, 액커만과 알스토틀(Ackerman & Alstott)은 기본소득을 정기적인 현금급여

가 아닌 일시금으로 지급하는 사회적 지분(Stakeholder Grants) 방식을 주장했다. 사회적 지분은 모든 자유로운 시민들에게 성인기를 시작하는 21세기 되는 해에 정부로부터 80,000달러 상당의 자산급여를 사회적 지분의 의미로 한 번에 제공하는 것이다.⁷⁾ 의미 있는 선택을 할 능력을 가졌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약간의 조건들(고등학교 졸업, 범죄경력 없음)만 충족되면 4년 동안 2만 달러씩 받을 수 있다. 사회적 지분 급여는 청년기 젊은이들에게 자신의 인생형성을 위한 커다란 자유를 제공한다.

또한, 오페(Offe, 2000, p.34)는 안식계좌(sabbatical accounts)를 보편적 경제적 시민권 관점에서 제안한다. 안식계좌는 기본소득을 생애 일정기간(예, 10년)동안 제공하는 권리를 보장하는 것을 의미한다. 안식년과 같이 안식이 필요할 때 기본소득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그는 이것을 기본소득에 대한 점진적이고 실험적인 접근으로서 활용될 수 있다고 제안한다.

III. 기본소득의 핵심 정체성 평가기준

기본소득 논의의 스펙트럼도 다양하지만, 이상적 모형과 현실적 모형의 갭도 상당하다. 따라서 기본소득의 핵심 정체성을 구성하는 요소가 무엇인가를 정리할 필요가 있다.

판 파레이스(2006; 2016)가 정리하고 있듯이, 기본소득의 목표는 탈상품화(de-commodification)할 수 있는 진정한 자유(real freedom)를 보장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첫째, 기본소득 정체성을 구성하는 가장 중요한 핵심요소는 ‘시민권(citizenship)에 기반한 무조건성(unconditionality)’이다. 임노동계약에 의한 자원배분이 아니라 시민권에 기반하여 어떠한 자산조사(means-test)도 없이, 노동능력에 대한 평가 없이, 이전의 노동 및 기여실적과 관계없이 무조건적으로 일정소득을 보장하는 것이다.

둘째, 기본소득 정체성을 구성하는 두 번째 핵심요소는 모든 시민에 대한 기본소득 보장의 보편성(universality)이다. 하지만, 기본소득의 핵심 정체성이 노동을 할 것인가

7) 토니블레이총리의 ‘베이비펀드(Child Trust Fund): 출생 당시 750달러 수급, 18세에 사회적 지분을 받을 때까지 복리로 누적, 추가급여가 모든 아동의 계좌에 출생 후에 입금됨으로써 아동이 성인이 되었을 때 7,500달러의 자본을 제공받는다. 재원은 연간부유세로 충당한다.

또는 하지 않을 것인가, 탈상품화에 대한 실질적인 자유를 강조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 ‘근로집단이 기본소득의 핵심 표적집단이라 할 수 있다. 근로집단은 일하지 않을 자유, 적극적인 탈상품화를 누릴 자유에 대한 진정한 선택이 가능한 집단이기 때문이다. 불안 정고용, 고용없는 성장으로 새로운 분배방식을 고려해야 하는 것도 근로인구에 대한 부분이다. 이에 비해 노인이나 아동, 장애인은 노동능력이 없기 때문에(또는 노동으로부터 은퇴를 결정하였기 때문에) 임노동계약에 의한 자원배분이 원천적으로 어려운 집단이다. 따라서 임노동계약에 의한 분배가 지배적인 전통적 복지국가에서도 노인, 아동, 장애인은 사회가 기본생활을 보장해주어야 하는 대상이었다. 즉 복지국가 역사적 발달 과정에서 이미 탈상품화된 이들은 기본소득의 새로운 소득보장 정책대상은 아니다. 예컨대, 노인이나 아동, 장애인과 같이 임금노동을 통한 소득확보로부터 이미 벗어나있는 이들에 대한 삶의 보장이 기본소득의 핵심표적이 아니다.⁸⁾ 이러한 측면에서 오페(1997)나 판 파레이스(2016)는 기본소득의 주요 대상은 모든 시민이지만, 그 중에서도 노동이 가능한 성인을 중심대상으로 고려했고, 노동가능한 집단에 대한 탈상품화의 자유 보장에 집중했다. 노인이나 아동, 장애인 등에 대한 자원배분은 임노동계약에 의한 자원배분과 비교할 때 부차적이고 파생적인 자원배분 유형으로 간주된다. 그러므로 기본소득 설계에서 핵심적 구성요소는 ‘노동공급이 가능한 근로집단을 대상으로 시민권에 기반한 무조건적인 기본소득을 제공하느냐 하는 것이다.

셋째, 기본소득의 정체성을 결정하는 세 번째 요소는 탈상품화를 실질적으로 가능하게 하는 급여수준의 충분성(sufficiency)이다. 탈상품화를 가능하게 하려면 노동소득의 보완이 아니라 노동소득 대체가 목적이므로 노동소득을 대체할 수 있는 충분한 수준의 급여수준이어야 한다. 그러나 판 파레이스(2011, 2016)는 무조건성에 비해 급여수준의

8) 오페(1997)가 지적했듯이, 노인이나 아동, 장애인 등은 이들의 속성상 임금노동을 통해 소득활동에 종사하는 것로부터 이미 벗어나있는 이들에 대한 삶의 보장은 기본소득의 표적이 아니다. 아동과 장애인에 대한 기초생활 보장은 인권이라는 철학적 바탕위에 이미 역사제도적으로 합의되었다. 하지만 노령층에 대한 연금수급 및 급여수준이 임노동에 기반한 기여실적과 긴밀히 연계된 경우에는 연금도 기본소득 방식의 무조건성이 반영되는 것이 중요하다. 노인에 대한 소득보장은 현행 소득보장체계에서 근로연령기 노동시장적 성과를 연계하는 측면이 커다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는 측면에서 근로연령기 성과와 관계없이 무조건적으로 보장하는 기본소득적 요소를 포함한 기초연금과 같은 제도가 필요하다. 그러나 기초연금은 사후적인 탈상품화 성격의 급여이므로 사전적이고 현재적인 탈상품화에 대한 실존적 자유를 선물하는 기본소득의 정신과는 거리가 있다. 따라서 노인에 대한 기초연금 도입은 근로연령층을 대상으로 하는 진정한 탈상품화를 논하는 기본소득에 대한 논의와는 다른 차원의 논의라고 볼 수 있다.

충분성에 대해서는 유연한 입장을 견지했다. 노동소득을 보완하는 미미한 수준이나 무조건성이 충족되면 기본소득의 정체성을 훼손하는 것으로 보지는 않았다. 급여의 충분성을 가늠하는 한 사회의 기본생활을 보장할 수 있는 수준은 공식 최저생계비 또는 최저보장급여 수준을 참고할 수 있다. 임금노동을 통해 기본소득에 더하여 노동소득을 더 보충할지 그렇게 하지 않을지는 개인의 선택이지만, 기본소득을 통해 최저생활이 가능한 급여수준의 충분성이 보장됨으로써 임금노동이 진정한 자유로운 선택이 될 수 있어야 한다.

이와 같이 기본소득의 목표는 탈상품화를 통한 진정한 자유의 보장이다. 이에 따라 기본소득의 정체성을 구성하는 핵심요소는 ‘무조건성 원칙’과 ‘보편성 원칙’, ‘충분성 원칙’이다.

기본소득의 세가지 핵심요소를 기준으로 기본소득의 이념형을 다시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기본소득은 ‘적용의 보편성’ 원칙이 중요하다. 기본소득은 모든 시민을 적용대상으로 한다. 특히 임금노동으로부터의 진정한 자유가 작동하는 근로시민에 대한 적용은 필수적이다. 둘째, 기본소득의 수급자격은 시민권에 기반한 ‘무조건성 원칙’이 가장 중요하다. 시민권을 기반으로 모든 개인에게 기본소득이 주어지며, 자산, 기여, 필요, 노동능력, 근로동기 등 어떠한 조건도 고려하지 않는다. 셋째, 기본소득의 급여수준은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임금소득을 대체할 만큼의 충분성을 담보해야 한다. 종합적으로 정리하면, 기본소득의 이념형은 보편적으로 모든 시민에게 무조건적으로 최저생계 보장 급여수준 이상의 충분한 기본소득을 보장하는 것이다. 기본소득은 자산조사와 노동능력 평가를 수반하지 않으므로 기본생활을 보장하는 동시에 취약계층이 착취에 기반한 저임금 정크 일자리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상황을 방지할 수 있다(Van Parijs, 2016, pp.37-39). 즉 기본소득을 통해 임금노동을 하지 않아도 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탈상품화가 가능함으로써 노동공급에 대한 진정한 자유(real freedom)에 기반한 협상력을 높일 수 있다.

그렇다면, 기본소득의 핵심적 요소를 유지하되 허용가능한 변형은 어디까지일까? 첫째, 적용대상과 관련하여 임금노동에 대한 탈상품화가 기본소득의 본질적 특성이므로 기본소득 적용대상이 모든 시민을 포함하지는 않더라도 근로집단은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그런 의미에서 근로집단을 적용대상으로 포함하지 않는 것을 기본소득으로 명명하기는 어렵다고 본다. 예컨대, 근로집단에 대한 기본소득이 보장되지 않는 상태에서

노인에 대한 기초연금, 장애인에 대한 장애인연금, 아동에 대한 아동수당을 기본소득으로 명명하기는 어렵다는 의미이다. 기본소득의 핵심 정체성인 노동공급에 대한 진정한 자유가 포함되지 않기 때문이다.

둘째, 수급자격의 무조건성과 관련하여, 무조건성은 기본소득의 가장 본질적인 특징이기 때문에 변형의 관용 여지가 크지는 않다. 그렇지만 애킨슨(Anthony Atkinson)이 제안한 바 있는 사회적으로 의미있는 기여노동을 조건으로 하는 참여소득(participation income), 고소득층을 역선택하여 급여대상에서 제외하거나 급여를 다시 환수하는(crow back)는 준보편적(역선택) 기본소득 등 약간의 조건부 기본소득은 변형가능한 범위로 고려할 수 있다.

셋째, 기본소득의 급여수준 충분성과 관련하여, 탈상품화가 가능할 수 있는 협상력 보장이 중요하다는 점에서 급여수준은 최저생활을 보장하는 수준이어야 한다. 하지만 재정역량 등의 제한으로 보다 낮은 급여수준이 모색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존수준의 급여수준은 보장되어야 할 것이다. 생존수준의 급여수준은 최저생계보장 수준의 최소 50% 수준으로 간주할 수 있다. 따라서 최저생계보장 수준의 50%에도 미치지 못하는 낮은 수준의 급여를 기본소득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이다.

넷째, 기본소득을 보장받을 수 있는 생애기간을 일정기간으로 제한하는 것을 기본소득 변형의 허용범주에 포함할 수 있다. 생산체제의 상황과 복지체제의 균열 등을 고려하여 기본소득 보장기간을 근로생애기간 중 일정기간으로 제한할 수 있다. 단, 기본소득 수급자격의 보편성, 기본소득 수급조건 무조건성, 탈상품화 가능한 급여수준의 충분성이라는 기본소득의 핵심요소는 포함되어야 한다. 정해진 기간 내에서 누구든지 기본소득이 필요하다고 요청할 때 아무런 조건없이 무조건적으로 충분한 수준의 기본소득이 지급되어야 한다.

다섯째, 액커만과 알스툰이 제안한 사회적 지분급여(stakeholding)인 자산급여(capital grant) 방식의 형태는 특정기간 급여로 필요한 소득을 자유롭게 설계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기본소득의 범주에 포함하여 고려할 수 있다.

표 1. 기본소득 구성요건의 이념형과 변형

		이념형	변형 범위
종합	제도목적 (종합적 평가)	모든 시민, 모든 시기 탈상품화 기본소득보장 (de-commodification)	근로가능집단을 포함한 (준)탈상품화 기본소득보장 (supplementary income)
	적용범위 (보편성)	모든 시민 (all)	근로가능집단을 반드시 포함 (a/some group(s))
핵심 요건	수급자격 (무조건성)	무조건(unconditional) (시민권 기반)	극히 제한적인 조건부 허용 (최상위층 claw back 등)
	급여수준 (충분성)	최저생활보장 수준 급여 (생계급여 이상)	최저생활보장수준에 약간 못미치는 불충분한 급여 (최소생계급여 50% 이상)
부가 요건	급여기간	기한없음	일정기간 제한
	급여방식	매월 (시민소득, 시민수당)	일시금 (자산급여)

자료: 필자 정리

기본소득의 정체성을 평가하기 위한 기준으로 기본소득 도입을 위한 동기와 목표가 중요하다는 주장도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기 조건들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는 기본소득이라고 명명하기 어렵다. 예컨대, 기본소득의 정체성을 지향한다고 하더라도 기본소득의 핵심 정체성을 훼손하는 수준의 변형을 허용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기본소득의 정체성이 낮은 것은 임금노동에 대한 진정한 선택 자유를 제공하는 탈상품화(de-commodification)의 가치를 지향하지 않는 것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기본소득의 핵심구성 요소 중 적용대상에 근로집단을 포함하지 않는 것, (준)무조건 원칙에 부합하지 않는 것, 생존급여 수준에 부합하지 않는 급여수준은 기본소득으로서의 정체성에 심각한 훼손을 주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실적 여건으로 인하여 변형될 수 있는 여지가 있다. 그러므로 기본소득의 정체성 수준을 평가하기 위해 일정한 기준을 고려해보고자 한다. 기본소득 정체성을 구성하는 핵심요소인 근로연령집단을 포함하는 적용의 보편성, 수급조건의 무조건성, 급여수준의 충분성에 대해 상기 기준에 따라 0-1점 사이의 점수를 부여하여, 종합적으로 세 값의 합으로 탈상품화 점수를 산출하였다.

탈상품화 점수 산출시에 각 요소가 기본소득 정체성에 기여하는 중요도를 고려하여 근로연령집단의 보편적 적용, 수급자격의 무조건성, 급여수준의 충분성에 대한 항목별

가중치를 각각 30%, 40%, 30%를 부여하여⁹⁾ 종합적인 탈상품화 점수를 산출하였다. 단, 기본소득의 정체성을 구성하는 세 가지 요소는 모두 핵심적 구성요소이므로 상기 세 가지 요소 중 하나라도 0.5점 미만인 경우는 다른 구성요소 점수가 충분하더라도 기본소득의 정체성에 심각한 결격사유이므로 기본소득으로 명명할 수 없다고 판단하는 질적인 평가기준을 동시에 적용토록 하였다.

이에 따라 첫째, 적용범위(근로연령집단)가 모든 집단이면 1점, 근로연령집단의 준보편적 인구집단이면 0.5점 이상 1점 미만 사이의 연속점수, 근로연령집단의 준보편성에 미달하면 0점을 적용한다. 둘째, 수급자격이 완전 무조건성은 1점, 비교적 무조건성은 0.5점 이상 1점 미만 사이의 연속점수, 비교적 조건부성 이하는 0점을 적용한다. 셋째, 급여수준이 생계급여 수준 이상이면 1점, 생계급여의 50% 이상이면 0.5점 이상 1점 미만 사이의 연속점수, 생계급여의 50% 미만이면 0점을 부여한다. 한편, 사회적지분급여의 경우에는 기본소득 급여수준 충분성 요건을 기준으로 최소 4년치가 되어야 충분성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설정하였다. 생계급여 수준의 기본소득 4년치를 사회적지분으로 배당하는 경우 1, 생계급여 50%에서 100% 미만의 기본소득을 사회적지분으로 배당하는 경우 0.5점 이상 1점 미만 사이의 연속점수, 생계급여 50% 미만의 기본소득 기준 4년치 미만인 경우 0점을 적용한다.

IV. 국내의 기본소득 구상 및 실험에 대한 정체성 평가

1. 국외 기본소득 구상 및 실험에 대한 평가

먼저 국외의 기본소득 구상 및 실험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스위스는 2016년 기본소득에 대한 권리를 헌법에 규정할 것인지에 대해 국민투표에 부쳤다. 국민투표는 기본소득에 대한 10만명 이상의 국민청원으로 실시되었다. 시민단체는 매월 성인 2,500프랑

9) 가중치는 기본소득 정체성에 대한 선행연구를 참고하여 연구자의 판단으로 부여하였다. 판 파레이스가 지적한 바와 같이, 기본소득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요소는 무조건성이므로 가장 높은 가중치인 40%를 부여하였고, 적용의 보편성과 급여의 충분성은 각각 30%의 가중치를 부여하였다.

(282만원 상당), 어린이 625프랑의 기본소득을 무조건으로 지급하는 안을 주장하였다. 그러나 국민투표 결과 찬성 23.1%, 반대 76.9%로 부결되었다. 반대의 주요 이유는 기본소득 도입시 재정부담, 기존 복지제도 축소 및 이민자 급증 등 문제가 발생할 것을 우려하였기 때문이다.

프랑스 사회당 대선후보 아몽은 소득불균형과 실업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모든 국민에게 매달 750유로, 우리 돈으로 약 94만 원의 기본소득을 지급하겠다고 발표했다.

미국 실리콘밸리에서는 인공지능(AI)과 로봇, 컴퓨터의 급속한 발전 등이 일자리를 위협하자 부(富)를 재분배하자는 차원에서 기본 소득을 논의하고 있다(조선비즈, 2017.11.2). 오클랜드의 비영리 단체¹⁰⁾가 미국 캘리포니아주 오클랜드시에서 100가구를 선정해 기본소득 실험을 하고 있다. 3~5년간 1000명의 저소득층과 중산층의 실험집단에게는 1000달러를 주고, 2000명의 통제집단에게는 50달러를 제공해 비교하는 것이다.

미국 알래스카는 1974년부터 원유생산에서 발생한 수익을 시민에게 환원해야 한다는 주장에 따라 알래스카 영구기금을 형성하고, 원유 수익금으로 조성된 기금의 배당금을 자산조사를 하지 않고 거주자 모두에게 매년 지급하고 있다. 배당금은 지난 5년간 기금 운용성과를 기준으로 매년 달라진다. 2016년 연배당금은 1,022달러였으며, 2015년의 경우 2,072달러였다. 그 결과 알래스카주의 빈곤율과 불평등도는 미국 내에서 가장 낮은 수준이다.

캐나다 온타리오 주는 빈곤감소에 대한 기본소득의 효과를 살펴보기 위해 기본소득 실험을 하고 있다. 온타리오 주에 1년 이상 빈곤선 아래 머문 18-64세 주민 중 중 자발적 참가의사를 밝힌 사람들 중 무작위로 선택하여 매월 1,320달러(저소득기준의 75%)의 소득을 보장한다. 기본소득 외 수입이 있는 경우 소득 달러당 50센트씩 기본소득을 적게 지급한다. 기존에 지급해온 아동수당과 장애수당은 기본소득과 관계없이 받을 수 있지만, 고용보험과 공적연금(CPP) 수혜자는 해당 금액만큼 기본소득을 덜 받는다. 65세 이상의 경우 대부분 기본소득보다 액수가 많은 노인수당을 받고 있기 때문에 시범 지급대상에서 제외했다(중앙일보, 2017.4.26).

네덜란드 유티레흐트 시는 시 차원에서 실업급여의 함정을 벗어나는 대안으로 기본소

10) 에어비앤비(Airbnb), 드롭박스(DropBox)를 발굴한 실리콘밸리 창업 지원기업 와이콤비네이터(Waycombinator)의 샘 올트먼(Sam Altman)이 설립한 비영리단체임.

득의 잠재성을 실험하고 있다. 실업자 250명을 세가지 실험집단으로 구분하여 2년간 960유로(120만원 상당) 정액급여를 지급하고 있다. 세가지 실험집단은 실업자가 사회 참여를 하지 않아도 제제를 받지 않는 집단, 사회참여활동을 하면 125유로를 추가로 받는 집단, 취직할 경우 사회보장급여외에 자기소득의 50%를 추가로 받는 집단으로 구분하였다.

표 2. 국외 기본소득 구상 및 실험

	적용범위	수급자격	급여수준/ 급여기간 및 형태
스위스 기본소득제안	모든 성인 및 아동	무조건	성인 2,500스위스프랑 (282만원) 아동 625프랑
프랑스 사회당 기본소득제안	18세 이상 모든 시민	무조건	750유로 (94만원) 빈곤선의 82.5% 수준
미국오클랜드 기본소득실험	21-40살	중위소득 미만	1,000달러 (114만원)
미국 알래스카 기본소득	거주민	무조건	시민배당 연1회 (2016년 연1,022달러, 2015년 연2,072달러)
캐나다 기본소득실험	거주민 18-64세	1년이상 빈곤층	1,320 캐나다달러 (저소득기준 75%)
네덜란드 유티레흐트 기본소득실험	실업급여 수급자	무조건 / 사회참여활동/ 취업	960유로 (120만원)
핀란드 기본소득실험	근로연령(25-58세) 실업급여 수급자	무조건	560유로(70만원)

자료: 필자 정리

핀란드는 국가차원에서 기본소득을 실험하고 있다. 핀란드 정부도 네덜란드와 마찬가지로 실업급여가 저소득일자리 임금보다 높아 구직을 포기하는 실업급여 함정이 심각한 문제라고 인식하고, 이를 타개하는 수단으로 실업급여 대신 기본소득을 도입하는 실험을 시도하고자 하는 것이다. 기본소득을 도입하면, 실업급여와 달리 노동유인을 저해하지 않는가를 확인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핀란드는 2017년 1월부터 2018년까지 실업자 2000명을 대상으로 560유로(70만원 상당)의 기본소득을 지급하는 기본소득을 실험하고 있다.

국외 기본소득 구상 및 실험에 대한 기본소득 정체성 평가결과는 <표 3>과 같다.

앞에서 제시한 기본소득 정체성 평가기준에 따라 0-1의 값을 부여하고, 기본소득을 구성하는 핵심적인 세 가지 구성요소 중 어느 것 하나라도 0점인 경우는 기본소득 정체성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평가하였다.

그 결과 스위스 기본소득 제안은 1점, 프랑스 기본소득 제안은 0.95점으로 기본소득이라고 명명할 수 있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그러나 미국알래스카 기본소득은 충분성 측면에 미달하여 기본소득으로서의 명명하기 어렵다고 평가되었으며, 네덜란드 유타헤르트시 기본소득 실험과 핀란드 기본소득 실험은 보편성 요소 미달로 인해 기본소득으로 명명하기 어렵다고 평가되었다. 미국 오클랜드 기본소득 실험과 캐나다 기본소득 실험은 무조건성 요소 미달로 인해 기본소득으로 명명하기 어렵다고 평가되었다.

표 3. 국외 기본소득 구상의 탈상품화 점수 및 기본소득 정체성 평가

		보편성 (30%)	무조건성 (40%)	충분성 (30%)	기본소득 판정 (탈상품화 점수)
스위스 기본소득제안	항목별 점수	1	1	1	기본소득
	탈상품화 점수	0.3	0.4	0.3	1
프랑스 기본소득제안	항목별 점수	1	1	0.83	기본소득
	탈상품화 점수	0.3	0.4	0.25	0.95
미국오클랜드 기본소득 실험	항목별 점수	0.5	0	1	기본소득 무조건성요소 미흡
	탈상품화 점수	0.15	0	0.3	0.45
미국알래스카 기본소득	항목별 점수	1	1	0	기본소득 충분성요소 미흡
	탈상품화 점수	0.3	0.4	0	0.7
캐나다 기본소득 실험	항목별 점수	1	0	0.75	기본소득 무조건성요소 미흡
	탈상품화 점수	0.3	0	0.23	0.53
네덜란드 유타헤르트시 기본소득 실험	항목별 점수	0	1	0.5	기본소득 보편성요소 미흡
	탈상품화 점수	0	0.4	0.15	0.55
핀란드 기본소득 실험	항목별 점수	0	1	0.5	기본소득 보편성요소 미흡
	탈상품화 점수	0	0.4	0.15	0.55

자료: 필자 정리

현재 국외의 기본소득 구상 중 실제 정책으로 실행되는 것은 미국알래스카 기본소득 하나이고, 미국오클랜드, 캐나다, 네덜란드, 핀란드는 빈곤감소 및 실업급여 대체시 근로유인 등을 실험하기 위한 정책목적을 갖고 사회적 실험으로 실시되고 있다. 스위스나 프랑스는 실현되지 않은 제안일 뿐이다. 기본소득 핵심 정체성 평가 결과 기본소득 정체성을 충족시키는 것은 스위스 및 프랑스 제안뿐이었다는 점을 감안하면, 제대로 기본소득이라 명명할 수 있는 기본소득 실현은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고 평가할 수 있다.

2. 국내 기본소득 구상 및 실험에 대한 평가

국내에서 기본소득이라는 이름 또는 기본소득의 일환이라며 제안된 것은 다음과 같다. 서울시 청년수당은 서울시 거주하는 19-29세 미만 미취업청년을 대상으로 구직활동을 장려하고 촉진하기 위하여 2개월에서 6개월까지 매일 50만원씩 지급한다. 신청대상은 중위소득 150% 이하계층이어야 한다. 주 30시간 미만으로 일하는 경우는 신청이 가능하다. 현금으로 지급하지 않고 카드로 지급된다. 카드로 지급되지만 시험비, 학원비, 식비, 교통비, 통신비 등 일반 생활비로 지출이 가능하다.

성남시 청년배당은 성남시에 3년 이상 거주한 만 24세 청년으로 무조건적으로 분기별로 25만원 상당의 지역화폐(상품권)를 지급한다. 만 24세 되는 해에 총 100만원의 급여가 주어지는 것이다.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것은 청년뿐만 아니라 지역 소상공인을 돕기 위한 고안이다. 전통시장, 소규모 소매점, 음식점에서 사용 가능하며, 대형마트, 대형음식점, 유흥업소에서는 사용이 불가능하다.

정의당 심상정 대선후보는 청년사회상속제를 제안했다. ‘청년사회상속제’는 상속증여세 세입 예산을 재원으로 국가가 책임지고 매년 20세(만19세)가 되는 모든 청년에게 1,000만원씩 균등하게 배당한다는 것이 정책의 골자다. 보육원 등 시설에서 자란 청년에게는 2,000만원을 배당한다. ‘부모로부터의 상속 자체가 불가능한 청년들에게는 더 많은 배당금을 지급함으로써 국가가 책임지고 사회상속을 실시해 최소한의 기초자산을 마련해줘야 한다는 취지다.

이재명 성남시장은 대선후보 경선과정에서 국민 2800만명에 대한 기본소득 지급을 지급하는 안을 제안했다. 0~29세 유·소·청소년 장애인, 65세 이상 노인, 30~64세 농어민에게 연간 100만원을 지역화폐 등 쿠폰 형태로 지급하는 것이다.

표 4. 국내 기본소득의 구상

	적용범위	수급자격	급여수준/ 급여기간 및 형태
서울시 청년수당	서울시 거주 19~29세 미만 미취업 청년	중위소득 150% 이하 취업준비 및 활동	월 50만원 (2~6개월 지급)
성남시 청년배당	성남시 거주 3년 이상 만 24세 청년	무조건	분기 25만원상당 지역화폐(상품권)
정의당 청년사회상속제	만 20세 청년	무조건	생애 1회 1,000만원
이재명 기본소득	0~29세 유·소·청소년 장애인, 65세 이상 노인, 30~64세의 농어민	무조건	연 100만원

자료: 필자 정리

이와 같은 국내 기본소득 구상에 대한 정체성 평가 결과는 <표 5>와 같다. 앞의 기본소득 정체성 평가기준에 따른 평가결과에 따르면, 서울시 청년수당은 보편성 요소에서 기본소득으로서의 자격을 갖추지 못하였으며, 성남시 청년배당은 충분성 요소에서 기본소득으로서의 자격을 갖추지 못하였다고 평가된다. 이재명 대선경선 후보의 기본소득 구상도 충분성 요소에서 기본소득으로서의 자격을 갖추지 못하였다고 평가된다. 정의당 청년사회상속제 구상도 1,000만원이 생계급여의 50% 수준 기본소득의 1.7년치에 불과하여 기본소득 충분성 요소에 부합하지 못하여 기본소득 정체성이 미흡한 것으로 평가되었다.

표 5. 국내 기본소득 구상의 탈상품화 점수 및 기본소득 정체성 평가

		보편성 (30%)	무조건성 (40%)	충분성 (30%)	기본소득 판정 (탈상품화 점수)
서울시 청년수당	항목별 점수	0	0.5	0.5	기본소득 보편성요소 미흡
	탈상품화 점수	0	0.2	0.15	0.35
성남시 청년배당	항목별 점수	0.5	1	0	기본소득 충분성요소 미흡
	탈상품화 점수	0.15	0.4	0	0.55
정의당 청년사회상속제	항목별 점수	0.5	1	0	기본소득 충분성요소 미흡
	탈상품화 점수	0.15	0.4	0	0.55
이재명 기본소득	항목별 점수	0.5	1	0	기본소득 충분성요소 미흡
	탈상품화 점수	0.15	0.4	0	0.55

주: 2017년 생계급여기준은 기준중위소득 1,652,932원의 30%인 495,879원임.
자료: 필자 정리

이와 같이 국내에서 논의되는 기본소득에 대한 구상도 기본소득 핵심 정체성 요건을 충족시키지는 것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본소득에 대한 논의는 무성하지만 국내외를 막론하고 현실적인 기본소득 구상에서 기본소득의 핵심 정체성이라 할 수 있는 노동 제공에 대한 진정한 자유를 보장하는 기본소득은 발견하기 어려웠다. 스위스의 기본소득 구상, 프랑스 아몽 대통령후보의 기본소득 구상 정도였다. 그러나 OECD의 기본소득 시뮬레이션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다른 사회보장제도를 모두 대체하는 방식으로 기본소득 도입을 논하는 것은 오히려 저소득층에게 불리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따라서 기본소득과 기존 사회보장과의 대체 및 보완관계에 대한 세심한 설계와 계층 영향, 빈곤 영향 정책효과를 고려한 설계가 필요하다는 점을 시사한다.

V. 새로운 과도기적 기본소득 구상의 제안: 청장년 근로시민 기본소득이용권

1. 새로운 기본소득 구상의 조건

기본소득은 프리카리아트 등 불안정고용층 비율이 높아지고 일자리가 줄어들고 있는 상황에서 산업사회 패러다임과 같이 임금을 자원분배의 중심방식으로 설정하는 것에 대한 근본적 회의를 품고 임금을 대체할 수 있는 새로운 분배방식으로서 제안되었다. 현재 전세계적으로 기본소득이 논의되고 실험적 구상이 제안되는 스펙트럼은 상당히 넓고 다양하지만, 근본적인 지향은 임금을 대체하는 탈상품화할 수 있는 진정한 자유를 보장하는 것과 관련된다.

현재 국내외 현실 정치에서 제안되는 기본소득은 기본소득의 고유한 정체성을 충분히 담보하지 않은 변형이거나, 또는 기본소득이라는 이름으로 덧씌워지는 것일 뿐 기본소득이라 명명하기 어려운 것들이 대부분이다. 따라서 이 연구를 통해 기본소득의 핵심 정체성을 추출하고 탈상품화의 진정한 자유를 보장하는 세가지 핵심요소인 보편성, 무조건성, 충분성을 중심으로 기본소득 정체성을 평가하였다. 기본소득 정체성 평가결과, 현재 국내외에서 제안되고 실험되는 기본소득 구상 중에는 스위스 기본소득안 등을 제

외하고는 기본소득의 핵심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기본소득이라고 명명하기 어려운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기본소득 핵심 정체성 검토 및 평가에 기반하여, 새로운 대안적 기본소득 구상을 위해 다음과 같은 조건을 고려하였다. 첫째, 모든 시민(특히 근로시민)에게 임노동을 선택할 수 있는 탈상품화(de-commodification)에 대한 진정한 자유를 부여하는 기본소득을 제공하여야 한다. 기본소득은 전통적 복지국가가 집중해 온 노인, 아동, 장애인 등 임금소득 획득으로부터 벗어난 집단, 그리고 실업, 재해, 질병 등 임금소득의 임시적 및 예외적 상실 위험집단 등에 대한 보장에 초점을 두고 있지는 않다. 기본소득은 노동가능집단의 탈상품화(노동하지 않아도 살아갈 수 있는 진정한 자유와 선택권)에 초점을 두고 있다. 노인, 아동, 장애인 등 소득무능력자로 사회적으로 소득보장이 필요한 집단에 대해서는 복지국가체제에서 이미 구축한 사회보장제도로 대응한다. 즉, 아동과 노인은 현재와 같이 아동수당과 공적연금(기초연금 및 국민연금 등)으로 보장하는 것이 적절하다. 따라서 기본소득은 노동가능집단에 초점을 둔다.

둘째, 시민권 기반(준)무조건적 수급자격을 적용한다. 기본소득에서 무조건적 수급 자격은 기본소득의 정체성을 가장 잘 보여주는 구성요소이다. 변형이 허용되는 정도는 최상위 소득계층에 대하여 지급-환급(crow back)의 절차를 생략하고 기본소득 지급대상에서 최상위 소득계층을 제외하는 정도이다.

셋째, 탈상품화할 정도로 충분한 수준의 기본소득을 보장하는 것이 중요하다. 급여수준은 재정역량에 따라 비교적 쉽게 타협되고 조정되는 요소로 취급되어 왔다. 그러나 기본소득의 지향이 탈상품화라는 점을 고려한다면, 급여수준을 탈상품화 가능한 수준으로 보장하는 것은 중요한 요건이다. 적어도 생존수준이 보장되는 급여수준이어야 한다. 단순히 다른 급여나 임금을 보완하는 수준으로는 기본소득이라 명명하기 어렵다.

넷째, 기본소득이 생산체제 변화에 조용한 대안적 분배방식인 만큼 생산체제 변화에 따른 분배방식 변화의 필요성에 조용하여 점진적으로 기본소득을 도입할 수 있는 방안의 모색이 필요하다.

다섯째, 전체적으로 기본소득 도입으로 사회적 후생(welfare) 증가에 기여하고, 사회적 효용성(utility) 제고에 기여하여야 한다.

여섯째, 기본소득은 실업급여, 산재보험 휴업급여 등 여타 사회보장급여와 대체관계일 필요는 없다. 실업급여는 수급기간이 최장 8개월(240일) 수급이 가능하기 때문에

기본소득과 병존해도 상관없다.

이러한 기준하에 대안적 기본소득 구상의 조건은 보편성, 무조건성, 충분성 등 탈상품화(de-commodification)에 대한 진정한 자유를 충족하면서도 노동기반 사회안전망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하는 균열을 '점진적으로' 대체할 수 있는 사회적 효용성이 높은 방안이어야 한다. 기본소득의 정체성에 내재된 궁극적인 기본소득의 가치와 지향점을 견지하면서도 현실적이고 실용적인 단계적 접근법이 필요하다고 생각했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는 생산체제 및 노동시장 상황의 점진적 변화에 따라 기본소득의 단계적 확대 도입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2. 과도기적 기본소득 구상의 제안: 청장년 근로시민 기본소득이용권

본 연구에서는 앞에서 논의한 기본소득 구상의 조건들을 충족하는 방안으로 기본소득 이용가능 기한을 한정하는 '기본소득이용권' 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기본소득에 대한 보편적 '기회'를 보장하는 방안이다. 기본소득을 상시적인 소득보장으로 제도화하는 개념이 아니라, 개인이 생애주기상 탈상품화가 필요할 때 기본소득을 보장받을 '기회'를 보편적으로 보장한다는 개념으로 발상을 전환한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기본소득에 대한 새로운 구상으로 탈상품화의 표적집단인 근로 시민에게 기본소득 이용기회를 보편적으로 보장하는 [청장년 근로시민 기본소득이용권]을 도입하는 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기본소득은 화폐자원 배분뿐만 아니라 안식기간(sabbatical period) 또는 생애 전환기간 보장을 의미한다. 즉 시간자원의 배분과도 연계되는 기본소득 보장의 의미를 갖는다. 이는 Offe(200)가 안식계좌(sabbatical accounts)를 제안한 것과 유사한 맥락이다.

또한 이 방안은 세대별 노동시장 변화 및 생산체제 변화에 대응하여 [청장년 근로시민 기본소득이용권]의 이용기한을 탄력적으로 조정해나갈 수 있는 방안이다. 따라서 이 방안은 보편적 적용원칙과 무조건적 보장원칙을 준수하면서도 특정시점에 기본소득 적용대상 규모는 작게 유지할 수 있다. 또한 이 방안은 4차 산업혁명 등 노동기반 분배 방식에 균열이 커지는 변화에 대응하여 [청장년 근로시민 기본소득이용권] 이용기한을 탄력적으로 조정함으로써 기본소득 역할이 단계적으로 확대될 수 있는 가능성을 내포한다.

[청장년 근로시민 기본소득이용권]에 대한 구체적인 제안은 다음과 같다. 첫째, 생애 주기 일정기간 동안 이용가능한 기본소득 이용권을 도입한다. 둘째, 최저생계수준 급여를 보장한다. 셋째, 현 단계에서는 기본소득의 이용가능한 기간을 청년기 최대 2년, 중년기 최대 2년 이용 가능한 것으로 설정하는 방안으로 도입한다. 청년기와 중년기로 구분하여 각각 2년씩 설정함으로써 근로연령 인생주기상 필요할 때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 아동과 노인은 아동수당과 공적연금(기초연금 및 국민연금 등)을 통해 탈상품화를 보장한다. 넷째, 신청주의에 입각하여, 기본소득이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경우 자발적인 포기도 수용한다. 단, 기본소득을 신청하면 개인별 이용권 한도 내에서 누구나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하다. 다섯째, 기본소득의 특성과 행정관리 용이성을 감안하여 6개월 단위로 신청이 가능하도록 한다.

이 방안의 특성은 다음과 같다. 첫째, 진로를 모색하는 청년, 예술가 등 특정직업군, 직업전환기 근로인구, 출산양육기 부 또는 모, 돌봄제공자 가족 등 특정집단, 또는 개인적으로 생애주기의 특정기간에 대한 기본소득을 설계할 수 있다는 점이다. 둘째, 모든 근로시민에게 기본소득 이용권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는 점이다. 근로연령층인 청장년을 표적대상으로 하며, 아동, 노인, 장애인 등 전통적 복지대상은 다른 제도형태로 대응한다.¹¹⁾ 셋째, 시민권에 기반한 무조건적 수급자격을 적용한다는 점이다. 넷째, 탈상품화가 가능한 최저생계 급여수준을 보장할 수 있다는 점이다. 다섯째, 실제 기본소득

11) 사회 전체적으로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부합하는 사회안전망의 재편이 필요하다.
 - 노령소득보장은 시민권 기반 기초연금과 보험료 기반 국민연금으로 보장한다.
 - 근로능력이 없는 장애인의 소득보장은 시민권 기반 장애인연금과 보험료 기반 국민연금 장애연금 및 산재보험 장애연금으로 보장한다.
 - 초등학교 이상 고등학생까지 아동은 아동연령별 아동수당으로 보장한다.
 - 영유아는 보육시설/양육수당으로 보장한다.
 - 청장년층 소득보장은 실직시 구직급여와 근로시민 생애주기 기본소득 이용권(4년: 청년기 2년, 장년기 2년)으로 보장한다.
 또한 맞춤 자활제도의 개혁이 필요하다. 이는 불완전한 맞춤 기초생활보장 개혁의 완성을 위한 것이기도 하다.
 - 자활의 임계질량의 법칙(박보희, 2017)을 적용하여, 자활대상이 된 후 일정기간 동안은 소득평가를 하지 않고 무조건적으로 지원한다.
 - 자활플래너와 함께 개별 맞춤자활계획을 수립하고 개별적으로 자활준비기간(1~5년)을 설정하고,
 - 자활준비기간 동안에는 근로소득공제를 유예하여 자활을 위한 개인자산을 축적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 1년마다 자활준비 상황을 점검하면서 개별 맞춤자활계획을 재점검하고 자활준비기간을 검토한다.

이용 여부 및 이용 시기는 시민에게 선택권을 부여함으로써 사회적 효용성을 최대화할 수 있다는 점이다. 여섯째, 기본소득 보장기간을 실질적으로 제한함으로써 재정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다는 점이다. 일곱째, 생산체제 및 노동시장 상황 변화에 따라 생애주기 기본소득 보장기간을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다는 점이다.

기본소득 재정규모는 다음과 같다. 현 단계에서는 모든 인구가 청년기와 중년기에 걸쳐 최대 4년의 기본소득 이용권을 활용할 수 있다고 설정한다. 급여수준은 생계급여 수준인 중위소득의 30% 수준으로 설정한다. 생애주기 청장년기 40년간 중 최대 이용가능 기간은 4년이므로 매년 청장년인구(청장년 연령규정 논의)의 평균 10% 인구에게 기본소득을 제공하게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기본소득 월 50만원 * 12월 * [청장년인구(20-59) * 0.1] = 18조 8,835억원
* 2017년 기준 청장년인구(20-59)=31,472,434명
* 기본소득 재정규모: GDP의 약 1.8%

기본소득의 안정적 재원조달을 위해 사회연대기금을 조성한다. 기본소득 재정수요가 예측 가능하지 않으므로 일반회계로는 기본소득 재원을 안정적으로 조달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기본소득에 대한 시민 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사회보장세를 통한 사회연대기금을 조성하는 것이 필요하다. 초기 1~2년의 기본소득 지출 대비 사회연대기금을 조성한 다음, 매년 근로연령기로 진입하는 연령대 청년들의 생애가용한 기본소득분에 해당하는 자금을 정부에서 출연하여 사회연대기금에 투입하는 방식으로 사회연대기금을 조성한다. 문제는 제도 도입초기에 쏠리는 기본소득 수요를 어떻게 적절한 수준으로 조절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것이다. 일정규모를 제한하고 우선순위를 부여하면, 무조건적 원칙을 침해하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입초기에는 사회적 합의 하에 근로를 하고 있지 않는 상태에 있는 경우를 우선으로 기본소득 이용권 사용을 허용하는 방식으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아직 해결해야 할 과제는 남아 있지만, 본 연구에서 제안한 [청장년 근로시민 기본소득 이용권] 구상은 지금까지 검토되거나 제안된 어떠한 구상보다 기본소득에 대한 현실적이고 효과적인 실용적 접근이 될 것이다.

참고문헌

- 강남훈. (2013). 불안전노동자와 기본소득. *마르크스주의 연구*, 10(2), pp.12-42.
- 강남훈. (2016). 인공지능과 기본소득의 권리: 마르크스의 지대이론과 새플리 가치 관점에서. *마르크스주의 연구*, 13(4), pp.12-34.
- 곽노완. (2008). 대안지구화의 경제적 시공간: 독일과 한국에서 기본소득과 사회연대소득의 가능성을 중심으로. *마르크스주의 연구*, 5(4), pp.154-184.
- 곽노완. (2013). 분배정의와 지속가능한 최대의 기본소득 -게으른 자에게도 지급되는 기본소득은 정의로운가?. *시대와 철학*, 24(2), pp.7-29.
- 권정임. (2013). 기본소득과 젠더 정의: 젠더 정의를 위한 사회재생산모형. *마르크스주의 연구*, 10(4): 104-141.
- 김교성, 백승호, 서정희, 이승윤. (2017). 기본소득의 이상적 모형과 이행경로. *사회복지정책*, 69(3), pp.289-315.
- 김교성. (2009). 기본소득 도입을 위한 탐색적 연구. *사회복지정책* 36(2), pp.33-57.
- 김교성. (2016). 이 시대 '복지국가'의 쓸모?! '불평등' 문제 해결을 위한 제안. *비판사회정책*, 52, pp.179-222.
- 김교성. (2017). 젠더협곡을 넘어 젠더정의로. *한국조세연구원 2017 재정전문가네트워크 발표자료집*.
- 김혜연. (2014). 기본소득 제안이 여성의 경제적 상태에 미치는 효과 분석. *사회복지정책*, 41(1), pp.33-63.
- 김혜연. (2014). 이데올로기적 다양성에 따른 기본소득의 정책 특성에 관한 연구. *비판사회정책*, 42, pp.92-139.
- 박보희. (2017). 사회정책 4.0을 향하여. *한국사회정책*, 24(3), pp.147-168.
- 백승호. (2010). 기본소득 모델들의 소득재분배 효과 비교분석. *사회복지연구*, 41(3), pp.185-212.
- 서정희, 조광자. (2008). 새로운 분배제도에 대한 구상 -기본소득(Basic Income)과 사회적 지분급여(Stakeholder Grants) 논쟁을 중심으로. *사회보장연구*, 24(1), pp.27-50.

- 안현효 (2012). 기본소득의 가치론적 기초: 정보재가치논쟁 재론. *마르크스주의 연구*, 9(4), pp.42-67.
- 안현효 (2016). 인지에 적용된 공유자원 패러다임: 기본소득의 가치론적 기초. *마르크스주의 연구*, 13(2), pp.68-91.
- 양재진 (2017). 기본소득에 대한 비판적 고찰. *화우공익재단 제3회 공익세미나 기본소득의 도입가능성 및 한계에 대한 쟁점토론 자료집*, pp.34-46.
- 윤연숙 (2012). 성평등 전략으로써 기본소득(Basic Income)의 함의에 관한 연구. *여성학 논집*, 29(1), pp.185-214.
- 윤홍식 (2017). 기본소득, 복지국가의 대안이 될 수 있을까?-기초연금, 사회수당, 그리고 기본소득. *비판사회정책*, 54, pp.81-119.
- 이명현 (2010). 시민권과 기본소득: 호혜성 원리 중심의 고찰. *사회보장연구*, 26(4), pp.433-457.
- 이명현 (2011). 복지국가 재편을 둘러싼 새로운 대립축: 워크페어(Workfare) 개혁과 기본소득(Basic Income) 구상. *사회보장연구*, 22(3), pp.53-76.
- 이승윤, 이정아, 백승호 (2016). 한국의 불안정 청년노동시장과 청년 기본소득 정책안. *비판사회정책*, 52, pp.365-405.
- 이주희 (2011). 고진로(High Road) 사회권 패러다임: 표준고용관계의 위기 극복을 위한 탐색적 시론. *동향과 전망*, 82, pp.244-279.
- 이향우 (2015). 자유/무료 노동의 화폐적 보상: 소액 결제 혹은 보편적 기본소득. *경제와 사회*, 107, pp.323-351.
- 정원호, 강남훈, 이상준 (2016). 4차 산업혁명시대 기본소득이 노동시장에 미치는 효과 연구. 세종: 한국직업능력개발원.
- 조남경 (2017) 기본소득 전략의 빈곤 비판: 호혜성, 노동윤리, 그리고 통제와 권리. *사회보장연구*, 33(3), pp.253-269.
- 조선비즈 (2017.11.2.). '신(新) 리더이트'를 막아라...실리콘밸리가 앞장서는 기본소득. http://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17/10/16/2017101600282.html#csid_x95ae9ba8ef4f4ce8b31aaf19a0558cd
- 주은선 (2013). 한국의 대안적 소득보장제도 모색: 현행의 복지국가 프로그램과 한시적 시민수당의 결합에 대한 시론. *비판사회정책*, 38, pp.83-126.

- 최한수. (2017). 각국의 기본소득 실험과 정책적 시사점. 재정포럼, 2017.5. pp.32-58.
- 한국은행 조사국 국제경제부. (2017). 주요국의 기본소득 논의 동향. 해외경제 포커스 2017.5.26.
- Ackerman, B. A., Alstott, A., van Parijs, P., Wright, E. O. (2010). *분배의 재구성*. (너른복지연구모임, 역). 나눔의 집. (원서출판 2006).
- Barnes, P. (2014). *시민배당*. (위대선, 역). 갈마바람. (원서출판 2014).
- Douglas, C. H. (2016). *사회신용: 왜 기본소득이 필요한가*. (이승현, 역). 역사비평사. (원서출판 1933).
- Esping-Andersen, G. et al. (2002) *Why We Need a New Welfare State?*. Oxford University Press.
- Ferguson, J. (2015). *분배정치의 시대* (조문영, 역). 여문책. (원서출판 2006).
- Offe, C. (1997). *Towards a New Equilibrium of Citizen' Rights and Economic Resources?* in Goodin, R. E. & Michell, D. (eds.). *The Foundations of the Welfare State, Volume I*. An Elgar Reference Collection, pp.87-114.
- Offe, C. (2000). *The German Welfare State: Principles, Performances and Prospectives after Unification. Thesis Eleven*, 63, pp.11-37.
- Raventos, D. (2016). *기본소득이란 무엇인가*. (이한주, 이재명, 역). 책담. (원서출판 2007).
- Standing, G. (2002). *Beyond the New Paternalism: Basic Security as Equality*. London and New York, Verso.
- Standing, G. (2014). *프레카리아트: 새로운 위험한 계급*. (김태호, 역). 박종철출판사.(원서출판, 2011).
- Van Parijs, P. (2016). *모두에게 실질적 자유를: 기본소득에 대한 철학적 옹호*. (조현진, 역). 후마니타스 (원서출판 1998).

석재은은 이화여자대학교에서 사회복지학 석박사학위를 받았으며, 현재 한림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로 재직 중이다. 주요 관심분야는 복지국가 비교, 소득보장, 연금, 장기요양, 사회서비스 등이며, 현재 돌봄정책, 사회서비스 공공성, 기본소득 등을 연구하고 있다.

(E-mail: seokje@hallym.ac.kr)

An Evaluation of Various Basic Income Proposals and a Proposal of Transitional Basic Income:

Basic Income Voucher for Working Citizens

Seok, Jae-Eun
(Hallym University)

This paper evaluates various basic income proposals that are receiving worldwide attention as distribution methods in response to the crack of the welfare system, such as an increase of precariat of labor, and suggests a stepwise introduction of basic income as the real need for a new distribution method matures. As a result of evaluating the basic income ideas proposed or experimented at home and abroad, it was estimated that many of them did not have core identity of basic income. The conditions of the new basic income should be gradually replacing the welfare system cracks that do not play the role of the labor-based social safety-net while meeting the real freedom of de-commodification such as universality, unconditionality and sufficiency. In this study, I propose a basic income voucher policy which limits the period of basic income available for working people who are experiencing unstable labor problems. It is a plan to introduce [basic income voucher for workers] which guarantees the basic income utilization opportunity for the working age population. In this case, the basic income has meaning of not only the distribution of money resources but also the rest period or life transition period guarantee. In addition, this proposal poses the possibility that the basic income role can be expanded step by step by flexibly adjusting the use period of [Working Citizen's Basic Income Voucher] in response to a change in the way of cracking in the labor-based distribution method such as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Keywords: Basic Income, Basic Income Evaluation, Basic Income Voucher, Youth, Middle-Aged Man, Working Citizens